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22
Fax : +82-70-8799-8339
E-mail: convention@krs.co.kr
Person in charge: HEO Kangyi

No : 2020-ETC-05
Date : 22 June 2020

제목 : 검사원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 (Rev.2)

1. 배경

본 기술정보는 지난 2019-ETC-04(첨부 참조)에 의해 발행된 “검사원 입회 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하여 협약검사내규 내용이 개정되어 알리기 위한 지침이며 51차 협약검사내규 발행일(2020. 7. 1) 이후 유효합니다.

2. 현행

우리 선급은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서비스를 협약의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검사원 입회 하에 시행되도록 원칙을 정하고, 아래의 경우에만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검사와 같은 검사기간 내에 시행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여 왔습니다.

- 1) 구멍뚫목 연차 개방검사
- 2) EPIRB의 매 5년 주기 육상시험
- 3) 각종 가스 실린더 및 에어실린더에 대한 5년 또는 10년 주기의 수압시험
- 4) 방수복에 대한 주기적인 공기압 시험
- 5) 휴대식 소화기, EEBD, SCBA 등과 같이 선상에서 반드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육상에서 전문공급자에 의해 검사될 경우

3. 개정 지침

하지만, 최근 고객 의견 및 타 선급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51차 협약검사내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은 신청된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검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멍뚫목 및 MES 연차 개방검사
- 2) EPIRB의 매 5년주기 육상시험
- 3) 방수복에 대한 주기적인 공기압시험

4) 소화설비에 대한 검사 및 시험

5) 무선설비(GMDSS) 및 항해통신설비(AIS, EPIRB, VDR) 점검*

* 단, 검사 윈도우 범위(검사기준일 +/- 3개월) 내에서 해당 검사의 증서 이서 전에 시행"

4. 따라서, 모든 현장검사원, 선주 및 관련 업계는 위의 변경된 지침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끝>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